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박덕흠 · 구자근
박성훈 · 조경태 · 김태호
우재준 · 곽규택 · 정동만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,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「교육기본통계 조사」에 따르면 전국 유·초·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,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,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

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, 학생 생활지도,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,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,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, 학부모의 알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4 신설).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4(교육정보의 공개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1.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성과에 관한 사항
2.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
3. 학생의 학습·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
4. 그 밖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학교 선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1.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
2. 학부모 대상 정기 통지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④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시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

법령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공개의 범위, 기준,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3조의4(교육정보의 공개) ①</u>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</u> <u>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</u> <u>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</u> <u>기 위하여 교육정보 공개에 필</u> <u>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</u> <u>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</u> 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</u> <u>하는 교육성과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관</u> <u>한 사항</u></p> <p><u>3. 학생의 학습 · 진로지도 및</u> <u>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</u></p> <p><u>4. 그 밖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</u> <u>및 학교 선택에 필요한 사항</u> <u>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사항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</u> <u>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<u>1.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</u></p>

를 통한 공개

2. 학부모 대상 정기 통지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④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시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공개의 범위, 기준,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